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2003. 04. 1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이유

- 충청북도의 학생들에게 임해수련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와 진취적 기상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2218-1번지에 임해수련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 이에 대한 운영관리 업무를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 통합시키고 그 명칭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종합야영장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안 제2조).
- 학생야영장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학생종합수련원에 동일하게 적용 (안 제6장).

□ 개정 조례안 : 불 입

□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기 타 : 입법예고(03. 04. 04 ~ 04. 1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및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이하 “수련원 및 야영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야영장”을 “수련원 및 야영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중 “야영장”을 각각 “수련원 및 야영장”으로 하고, “장장”을 각각 “원장 및 장장”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개원·개장시기 및 시간) 수련원 및 야영장의 개원·개장시기 및 시간은 원장 및 장장이 정한다.

제33조제1항중 “야영장”을 “수련원 및 야영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한다.

제34조중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야영”을 “수련 및 야영”으로, 제3호의 “장장”을 “원장 및 장장”으로 한다.

제36조중 “야영장”을 “수련원 및 야영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징수) ①야영장 이용자	제33조(사용료 징수) ①수련원 및 야영	장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u>잡잡이</u>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②		원장 및 잡잡이
제34조(이용제한) 잡잡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4조(이용제한) 잡잡이는 다음 각 호에	제34조(이용제한) 원장 및 잡잡이		
1. 야영질서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야영질서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1. 수련 및 야영		
2. (생 략)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잡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잡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원장 및 잡잡이		
제3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이용자의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5조(이용자의 책임)		수련원 및 야영장
제36(개정)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6(개정)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36(개정) 수련원 및 야영장		
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